

##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제4조의2 (대출계약 철회)</b></p> <p>① 채무자(개인에 한함)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(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일(이하 “철회기한”이라 합니다)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</li> <li>2.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</li> <li>3. 시설대여(리스),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</li> <li>4.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(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통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)</li> </ol> <p>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, 이자,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, 용역(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)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</li> <li>2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</li> <li>3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</li> <li>4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</li> </ol>	<p><b>제4조의2 (청약의 철회)</b></p> <p>① 일반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~⑥ (삭제)</p>	<p>금소법 개정에 따른 청약철회권 내용 반영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</p> <p>④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.</p> <p>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</p> <p>⑥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</li> <li>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⑦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채무자에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</p>	<p>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</p>	
(신설)	<p><b>제4조의3 (위법계약의 해지)</b>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	<p>금소법 개정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 신설</p>
<p><b>제7조 (연대보증인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<u>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</u></li> </ol>	<p><b>제7조 (연대보증인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u></li> </ol> <p>가. <u>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</u>  나. 「주택법」에 따라 <u>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금융소비자가 공동주택 관련 이주비 또는 중도금</u></p>	<p>금소법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 성립 가능 요건 반영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2.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<u>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. 단,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하다.</u>  가. <u>최대주주</u>  나. <u>지분 30%이상 대주주, 과점주주 이사</u>  다. <u>본인과 배우자, 4촌이내 혈족·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%이상인 주주</u>  라. <u>대표이사 또는 대표자(단, 고용임원 제외)</u>  마. <u>무한책임사원</u></p> <p>3. <u>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(리스, 할부, 오토론 포함)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</u>  가. <u>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</u>  나. <u>영업목적(택시, 승합, 화물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 등)의 차량구입</u></p> <p>4. <u>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</u>  가. <u>제3자 명의 예·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</u>  나. <u>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, 건축주,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(다만,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)</u>  다. <u>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·중도금·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·시공사의 대표자</u>  라. <u>법인격 없는 단체(조합 등)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(조합원)</u></p> <p>5. <u>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</u>  ③ <u>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</u></p>	<p><u>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시공사</u></p> <p>2.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u>  가. <u>대표이사</u>  나. <u>무한책임사원</u>  다. <u>「상법」에 따른 최대주주</u>  라. <u>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(배우자·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)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</u>  마. <u>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</u></p> <p>③ <u>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</u></p>	